

2018 보건소
알차게
이용하기

2018 보건소 알차게 이용하기

발 간 번 호 | 2018-02-013

발 행 일 | 2018년 12월

발 행 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발 행 인 | 조 인 성

집 필 진 | 최정미 팀장, 박현숙 선임전문원, 이가현 전문원

주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대 표 번 호 | 02-3781-3500

홈 페이지 | www.khealth.or.kr

인 쇄 처 | 디자인숲

2018 보건소
알차게
이용하기



유의사항

✓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각 보건소별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책자에 소개된 업무를 일부 보건소에서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 제공 서비스는 '2018년도 사업안내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018년 안내서가 발간되지 않은 경우는 전년도 안내서를 참고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1

보건소 소개	6
--------------	---

02

보건소 업무 소개	11
-----------------	----

 보건의료서비스	11	5. 비취학 청소년 건강진단	43
		6.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44
 진료 및 감염병 예방	12	성인 이용하기	45
진료안내	12	1.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포함) ...	45
감염병 예방관리	13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47
위생관리	14	3. 건강위험요인 개선 맞춤 영양관리 ...	48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	15	4. 지역사회 신체활동	49
임산부 이용하기	15	5. 방문건강관리	50
1.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15	6. 지역사회중심 재활	52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6	7. 금연클리닉 운영	53
3. 임신부 등록관리	18	8.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54
4. 산모건강관리(임산부 건강관리) ..	19	9. 한의약 건강증진	55
5. 영양플러스	20	10.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56
6.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2	11. 국가 암 검진	57
영 · 유아 이용하기	25	12.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59
1. 난청조기진단		1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6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25	어르신 이용하기	64
2.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7	1. 치매안심센터 운영	64
3.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2. 치매 검진	66
의료비 지원	29	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68
4. 영유아 건강검진	31	4.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70
5.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33	5. 의료급여	
6.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34	노인틀니 · 치과 임플란트	71
아동 · 청소년 이용하기	37	6. 노인 안검진	73
1. 불소용액 양치	37	7. 노인 개안수술 지원	74
2.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38	8. 노인 건강진단	76
3. 저소득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40	9.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77
4. 청소년 산모		 민원서비스	78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42	제증명발급	78
		허가 · 신고 · 등록	79

03

보건소 위치 및 연락처	81
--------------------	----

01 보건소 소개



1 보건소 정의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보건기관

※ 의료접근성이 낮은 일부 군지역은 보건소에 병원 기능(전문진료, 응급실, 입원실, 수술실 등 운영)을 추가한 보건의료원 운영(울릉군 보건의료원 등 전국 15개소, 2018년 기준)

2 법적 근거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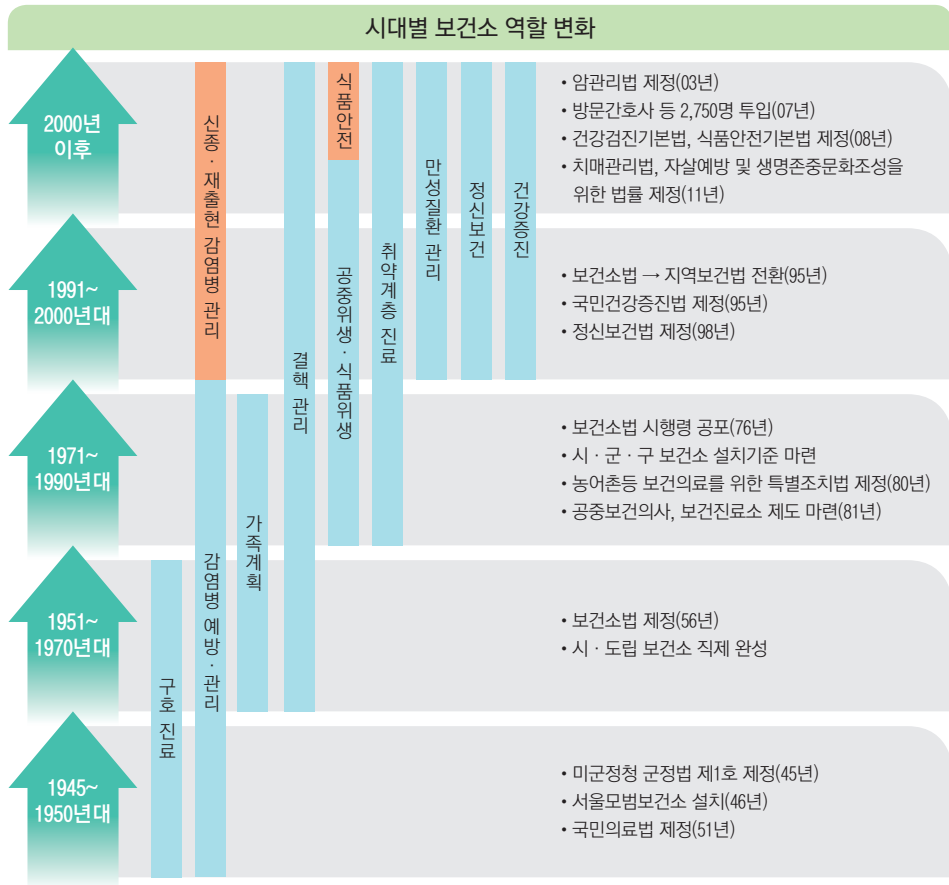
➔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보건소의 설치)

➔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시대별 보건소 업무 변화



4 설치현황

➔ 기초자치단체별 설치, 전국 254개 운영(2018. 6.)

※ 설치근거 :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시·도별 보건소 설치현황																(단위 : 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	16	8	10	5	5	5	1	44	18	13	16	14	22	25	20	6



▲ 보건소 모습



▲ 보건의료원 모습

5 하부기관

가. 보건지소

➡ 농어촌 읍·면지역 주민에게 일차의료 서비스, 건강증진 서비스 등 제공

※ 의사, 간호사 등 보건지소 당 평균 약 4~5명의 인력이 근무하며, 전국 1,335개 설치(2018. 6.)

나. 보건진료소

➡ 농어촌 리(마을) 단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인이 근무하며, 전국 1,905개 설치(2018. 6.)



▲ 보건지소 모습



▲ 보건진료소 모습

다. 건강생활지원센터

- ➡ **정의** :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 의료기관'

도시보건지소 확충사업(2007~2013)

-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대상 보건의료서비스 미충족 해소를 위해 시작
- 사업 부지 및 많은 인력 투입으로 참여 저조, 진료기능으로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 어려움

도시보건지소 효율화 모형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2013)

건강생활지원센터 정규사업 실시(2014~)

- 진료기능을 제외한 지역특화 건강증진사업의 건강생활지원센터 모형 전환
- 인력, 설치규모 등 효율화 및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연계 추진 방향으로 유도

- ➡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 **설치현황** : 전국 총 66개소 확충, 총 46개소 운영

※ 최소인력배치 기준은 5인 이상이며, 총 341명의 보건의료인력이 근무중임(2018. 6.)

시·도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현황

(단위 : 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	2	2	5	4	0	0	0	12	4	2	4	2	4	1	3	1

➡ 제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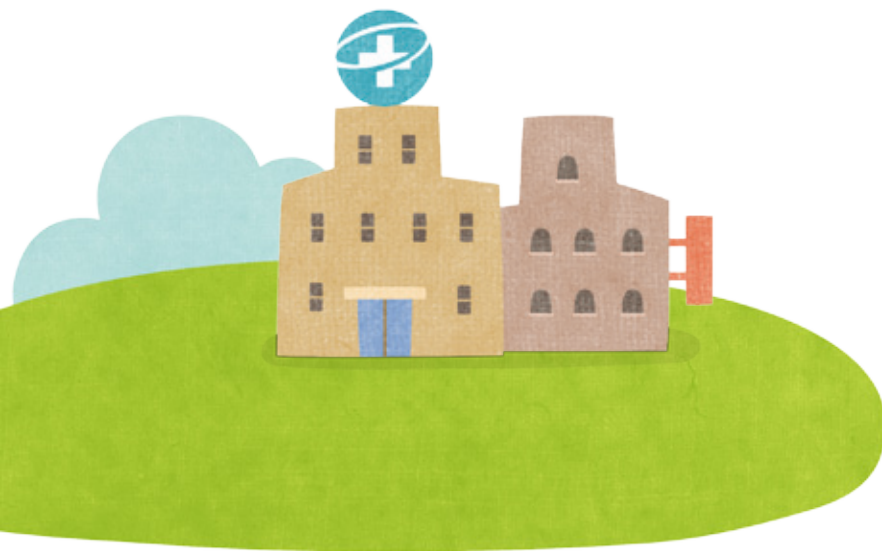
- (기본사업)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관리
- (특화사업) 13개 분야(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 한의약, 아토피·천식, 임산부·어린이, 치매, 재활, 방문) 중 주민참여, 지역자원 협력을 통한 지역밀착형 특화사업 1개 이상 필수 운영



▲ 건강생활지원센터



▲ 건강생활지원센터



02 보건소 업무소개



보건의료서비스

- 지역사회 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및 기타 관련 법류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보건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 건강증진 질병관리, 암 관리, 구강보건, 정신보건, 모자보건, 한의약 건강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비스 운영 및 제공

구분	내용
일반 진료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진료지원(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물리치료, 조제 및 주사 등)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금연, 절주, 구강건강, 영양관리, 신체활동,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역사회 재활, 방문건강관리, 치매 예방,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여성·노인·장애인 건강증진 등
감염병예방관리	감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역학조사, 감염병 위기 대응, 성매매 감염병 관리, 결핵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방역소독, 예방접종
위생관리	식중독 신속 보고 및 관리
의약무 행정	보건의료인(의료인, 의료기사·의무기록사, 약사 등) 지도 및 관리
기타	이외 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진료 및 감염병 예방

1 진료안내

➔ 진료

업무명	업무 내용
일반 진료	기본적인 진료, 처방전 발행, 보건사업관련 대상자 선별, 임상병리 검사 의뢰, 기본적인 X-ray 판독(결핵 선별검사), 물리치료처방, 원내처방, 고혈압 및 당뇨병환자 관리, 법정 감염병에 관한 보고 등
치과 진료	충치치료, 발치 등 ※ 일부 보건소에서는 '발치' 진료하지 않음
한방 진료	상담 및 한방진료

➔ 진료 지원

업무명	업무 내용
임상병리 검사	진료부서에서 의뢰한 대상자의 병리검사, 소변, 세균 및 수질검사 등
방사선 촬영	진료실, 민원실, 결핵실에서 의뢰한 대상자의 방사선촬영, 방사선 촬영 의뢰 접수 등
물리치료	진료부서에서 의뢰한 대상자의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
약 / 주사	진료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른 주사 및 조제

※ 보건소별로 특화된 업무가 있을 수 있음

진료예약, 진료내역 조회 등 서비스를 보건소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보건소 홈페이지 혹은 공공보건포털 <http://www.g-health.kr/>)을 통해 예약, 조회 및 출력 가능



2

감염병 예방관리

- ➔ 감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
-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역학조사
- ➔ 감염병 위기 대응
- ➔ 성매개 감염병 관리(성병 및 에이즈(AIDS))
- ➔ 결핵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 ➔ 방역소독
- ➔ 예방접종

감염병 분류

구분	특성	신고주기	종류
제1군	마시는 물 또는 식품 매개로 발생 및 방역대책 수립 필요	즉시	(6종)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2군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질환	즉시	(12종)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제3군	간헐적 유행 감시 및 방역대책수립대상	즉시	(22종)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쓰쓰가무시,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 크로이츠펔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펔트-야콥병(vCJD),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4군	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내 유입 우려 해외유행감염병	즉시	(19종)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감염병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제5군	기생충 감염으로 발생	7일 이내	(6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지정	유행여부 조사·감시 필요	7일 이내	(14종)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침균곤딜로마,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성매개	성 접촉으로 전파	-	(7종)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침균곤딜로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자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 환자 발견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3 위생관리

➡ 식중독 신속 보고 및 관리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손씻기

손은 30초 이상 세정제(비누 등)를 사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행구세요.

익혀먹기

음식물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드세요. (중심부 온도가 75℃ (어패류는 85℃), 1분 이상)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마셔야 해요.

8단계 손씻기 요령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임산부 이용하기

1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 여성생식건강관리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

-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 ➔ 지원대상 : 가임기 여성 전체
-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여성생식 건강증진 프로그램	• 대학생, 예비부부,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아동 등을 대상으로 여성생식 보건 프로그램 운영(캠퍼스 생식건강증진센터 운영)
성교육·성상담 프로그램 및 홍보	• 성교육, 성상담, 전문상담기관, 사회복지시설, 관할 경찰서 등 관련 유관기관 연계·지원 • 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 공모전 개최 및 캠페인 전개 등
임신·출산·육아 등 종합정보 제공	• 임신부, 여성장애인 등 가임기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임신·출산 및 육아 관련 종합정보 제공 -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1644-7373/1644-7382)
보건소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모유수유 홍보 및 캠페인 - 모유수유 홈페이지 및 동아리 모임, 문자 서비스 제공, 서명운동, 엄마젖 먹는 건강한 아기 선발대회 등 • 교육·상담 등 세부프로그램 - 모유수유 및 모유착유기 위생관리 교육 및 상담, 산모식·이유식 상담 및 올바른 영양정보 제공 - 가정보건방문사업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연계추진 • 모유수유 전화상담(1644-7373) 및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제공 • 아이사랑 사이트(http://www.childcare.go.kr/) • 전국 모유수유시설 현황제공(인구보건복지협회 : http://www.ppfk.or.kr/)
모유수유 시설 (수유 및 착유) 설치 및 관리	• 모유수유(착유) 시설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해가 없도록 시설 설치 및 관리

- ➔ 서식/자료 : 2018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여성어린이특화)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하고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 지원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
 -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정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 신청서를 발급하는 연령 기준은 신청대상자의 신청일 기준으로 만 44세까지로 함
 - ※ 단,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건강보험의 경우 시술시작일 기준으로 연령을 제한)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구분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횟수	• 최대 4회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범위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비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시술

➡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2018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701,100	115,568	129,883	116,936
3인	4,788,000	149,745	170,039	152,061
4인	5,875,000	185,543	207,227	188,442
5인	6,962,000	218,525	243,150	223,032
6인	8,049,000	258,360	282,164	268,167
7인	9,136,000	291,638	312,942	306,683
8인	10,222,000	324,976	342,920	35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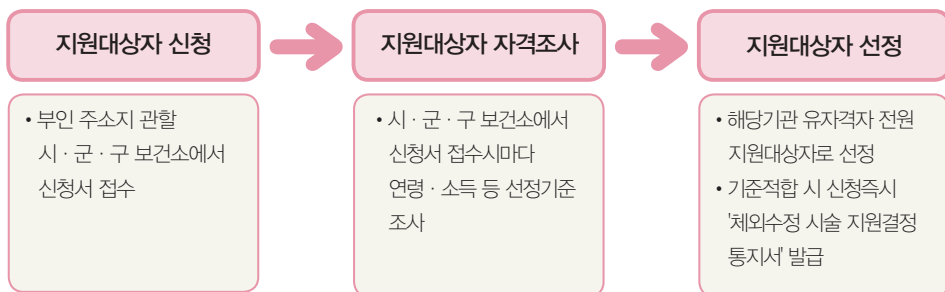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18.1.1~2018.12.31까지 적용

➡ 신청절차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지원 신청(연중 접수)

※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① 난임진단서 원본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⑥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2018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3 임신부 등록관리

☞ 임신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등에 신고한 임신부

☞ 지원내용

구분	산전 관리
임산부 신고·등록관리	•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등에 신고한 임신부에 대하여 등록·관리 - 주기적인 상담 및 방문실시로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실시 -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부의 출산지원 정책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 임신·출산 관련 지원사업 안내(휴대폰 문자 전송 등) 및 정보제공 - 표준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어린이수첩) 안내 및 배부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및 적극 지원을 위해 지역 내 대상자 특별 관리 • 철분제·엽산제 지원 • 임신부 등에 대한 산전·후 우울증 진단 및 사후관리 안내, 교육강화, 상담 등 우울증 예방·관리 강화
고위험 임신부 특별관리	• 고위험 임신대상자 - 만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 -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 질환자 -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 고위험 임신부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고령임신 여성에 대한 관리 - 35세 이상 여성 및 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 여성은 임신 전 질환 치료 등 관리
	산후 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난청 조기검진 등 모자보건사업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등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 분만 1주내 전화 등 이용 건강 이상 유무 확인 • 분만 4주 이내 전화 또는 방문상담(원하는 경우만 제공) 실시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 산전 모유수유 교육·홍보 - 산후 방문 시 모유수유의 필요성, 권장시기, 수유법 등 지도·관리 필요 • 모유수유 교육 및 캠페인, 모유수유 선발대회 등 실시

☞ 서식/자료 :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여성어린이 특화)

4 산모건강관리(임산부 건강관리)

- ❏ 임산부부터 영유아까지 예방접종, 검진 등 조산, 유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분만 유도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내용	상세 지원 내용
산전혈액검사	• WBC검사, 간기능, 빈혈, 혈액형, 매독, 에이즈, 총콜레스테롤, B형간염 항원항체, 소변검사(당/단백뇨)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지원) ※ 지자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급 가능 ※ 철분제는 의약품을 제공
엽산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지원) ※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엽산제는 의약품을 제공
산후우울증 관리	• 아이사랑 사이트(www.childcare.go.kr) 산전후 우울증 온라인 상담 안내 • 보건소 내소 산모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산모 대상 선별검사 실시 • 자가설문지원 및 고위험군 추후관리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산전 진찰 보험급여(보험급여 진찰 항목 수락을 통한 임산부의 적기 검진 유도) - 산전검사 시행 시기, 임신기간 중 검사 안내 등
임산부 배려 엠블럼 (가방고리) 제공	• 보건소 등록 모든 임산부
임산부의 날 (10월 10일)	• '임산부의 날' 관련 각종 행사 운영 및 출산용품 제공 * 보건소별 상이

➡ **서식/자료** : 2018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여성어린이특화)



5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지원대상

-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대상 분류, 소득 및 영양 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
 - ※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됨
 - ➔ 거주 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별 관할지역 내 거주
 -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 본 사업은 가정단위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 ➔ 소득 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치 하향 조정 가능함
 -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으로 선정 가능
-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의 참여 신청 접수 후 자격 여부를 판정함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단위 : 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38,000	42,099	12,761	42,168
2인	2,278,000	71,374	59,490	71,788
3인	2,947,000	92,410	95,295	93,448
4인	3,615,000	112,792	126,195	114,241
5인	4,284,000	133,811	153,025	135,662
6인	4,953,000	156,121	176,921	158,193
7인	5,622,000	176,657	197,937	179,545
8인	6,291,000	198,786	221,190	202,519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으로 관리 시스템 입력

※ 위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2018년 7월까지만 적용 가능하며, 이후 소득판정 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대상자별 자격기간

구분	자격기간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 생후 만 1세~만 6세 미만(72개월 미만)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 ※ 참여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자격 재평가를 실시하여 자격종료 또는 지속 결정
 ※ 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기간 내 참여기간이 6개월이 넘더라도 자격 재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대상자 영양관리를 위한 식생활 평가 및 상담은 시행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건소 별 지역특성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최소 월 1회 이상 제공
 ※ 교육방법 : 집단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
- 보충식품 공급 : 수혜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식품 패키지 공급
 ※ 식품패키지에 따라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굴·오렌지주스 등의 식품 공급

➔ 신청절차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

- 지원서류
 - ➔ 가구원 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소득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 기타 : 임신·출산 여부 증명서류(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 서식/자료 : 2018년 건강증진사업안내(영양)

6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모에게 일정기간 산모의 영양관리, 신생아 예방접종 등의 신생아 양육 및 산후 회복을 지원하는 건강 증진 서비스

➡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 18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71,374	59,490	71,788
3인	92,410	95,295	93,448
4인	112,792	126,195	114,241
5인	133,811	153,025	135,662
6인	156,121	176,921	158,193
7인	176,657	197,937	179,545
8인	198,786	221,190	202,51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구분	이용가능 서비스
산모건강관리	산모 신체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지지

※ 그 외 부가서비스 :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



➡ 신청절차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보건소)
 - ※ 온라인 신청 : 복지포털(www.bokjiro.go.kr)
 - ※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시 · 군 · 구(보건소)로 관련 서류 이송 처리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 첨부서류 :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비자(사증),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증명자료, ④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⑥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바우처 :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식/자료 :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영·유아 이용하기

1

난청조기진단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

➤ 지원대상

-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전)에 실시하도록 권장,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주로 분만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2018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7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050,000	64,142	46,776	64,845
3인	2,652,000	83,531	82,664	84,229
4인	3,254,000	102,190	110,400	103,218
5인	3,856,000	121,312	137,491	122,690
6인	4,458,000	139,572	159,232	141,300
7인	5,060,000	158,193	179,353	160,668
8인	5,662,000	176,657	197,937	179,545
9인	6,264,000	198,786	221,190	202,519
10인	6,866,000	214,407	238,237	218,52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18.1.1~2018.12.31까지 적용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 AOAE 10,000원 / AABR 27,000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
 -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지급

➡ 지원방법

- 지원신청 :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지원대상 가정에 쿠폰 지급
 - ➔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임신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쿠폰은 보건소에서만 발급함
 - ➔ 쿠폰은 검사기관에 검사 전 제출을 원칙으로 함 (검사날짜 이후 발급받은 쿠폰을 제출할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청각선별검사비 지급은 사후정산이 원칙
- 재검환아 안내 및 지원방법
 - ➔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을 받은 환아 등록관리 및 전문병원 안내(보건소)
 - ➔ 확진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고 신청인은 보건소장에게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검사 후 1개월 내 청구(환아가정→보건소)
 - ※ 쿠폰(검사결과가 기재된 난청확진 검사 부분), 영수증, 통장사본 등
 - ➔ 타지역으로 이동(이사)한 경우 확진검사비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동(이사)한 지역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비를 지급하도록 안내(전입 · 전출 지역 해당 보건소)

➡ 지원절차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아이사랑 : <http://childcare.go.kr>
- G-Health : <http://www.g-health.kr>
- 국민건강정보포털 : <http://health.mw.go.kr>

➡ 서식/자료 :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환아의 치료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서비스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대상자 : 당해연도에 출생 201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 ※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검사항목 : 6종 검사(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채혈검사 기관 : 보건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 지원내용
 - ➔ 검사비 : 1인당 20,000원
 - ➔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검사 후 6개월 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 청구
 -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 중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1인당 50,000원 범위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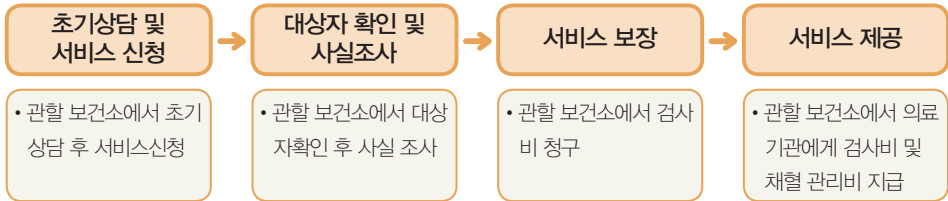
➔ 환아관리

- 대상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류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8세 미만의 환아
 - ➔ 페닐케톤뇨증 환아,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호모시스틴뇨증 환아, 단풍당뇨증 환아, 갈락토스혈증 환아, 크론병, 단장증후군 환아(희귀·난치성 질환)
- 지원내용
 - ➔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은 환아로 등록된 자에게 치료와 관련된 정보 제공과 홍보 등을 실시
 - ➔ 특수조제분류, 저단백식품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제외)
 -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 ※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
 - ※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1부, 의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1부,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절차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임심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http://www.childcare.go.kr>
- G-Health : <http://www.g-health.kr>

➡ 서식/자료 : 2018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 지원대상 (공통사항)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정의

구분	내용
미숙아	• “미숙아”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중복지원불가서비스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 지원내용

- 미숙아
 - ➔ 지원요건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건강보험·의료급여 상한제로 인한 이중지원 예방

→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2.5kg 이상 37주 미만	2.0kg 미만~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지원요건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2회 이상 입원은 1회만 지원)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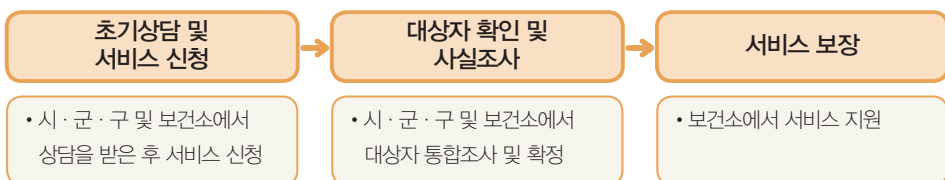
➡ 신청절차 (공동사항)

•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첨부서류 : 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③ 입급계좌통장 사본 1부, ④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⑤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등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⑧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지원절차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아이사랑 : <http://childcare.go.kr>

➡ 서식/자료 : 2018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4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

➡ **근거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

➡ **지원대상 (공통사항)** : 만 6세 미만 영유아

구분	시행주체 (시행방법)	검진주기 및 유효기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시·군·구 보건소 (위탁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1차 (4개월) : 생후 4~6개월 2차 (9개월) : 생후 9~12개월 3차 (18개월) : 생후 18~24개월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수행)	4차 (30개월) : 생후 30~36개월 5차 (42개월) : 생후 42~48개월 6차 (54개월) : 생후 54~60개월 7차 (66개월) : 생후 66~7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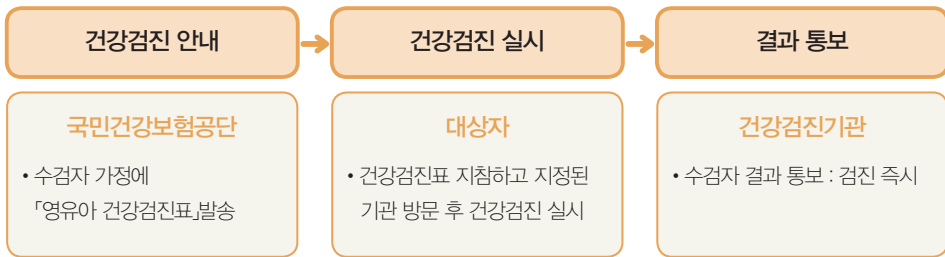
➡ 건강검진 항목

- 선별 목표 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이상, 치아우식증 등
- 검사항목 :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2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 실시
 -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과 9종의 건강교육으로 구성
 - ➔ 세부사항은 건강검진실시기준에서 정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

➡ 대상자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개인별 주소지로 발송
- 영유아 건강검진 사전알람(SMS) 및 전자우편(E-mail) 서비스
- 건강검진표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검진확인서'는 공단 지사에서 수시발급

➔ **검진절차**



➔ **검진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처**

- 보건보건의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 **관련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s.or.kr>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2018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5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내용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방법

- 보건소는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발급
-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
-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검사비를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 청구

➔ 서식/자료 : 2018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6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기본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평생 기초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5.1.1. 이후 출생자)

- 2017년부터 사업대상자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적용함
-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은 연령, 신규도입된 백신의 경우 예방접종비용 지원 대상 연령이 제한됨
 - ➔ BCG는 생후 59개월까지 지원(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 Hib, 폐렴구균 : 생후 59개월 이하(단,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서도 지원)
 - ➔ A형간염 : 2012.1.1. 이후 출생자
 - ➔ HPV : 2005~2006년 출생한 여자
 - ➔ 인플루엔자 : 생후 6개월~만 12세 이하 어린이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는 해당 사업에서 예방접종비용 등을 지원하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B형간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함

➡ **지원내용**

- 국가예방접종의 접종비용(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 전액 지원

➡ **지원백신** : 17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수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Flu(인플루엔자),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미지원백신(비용 전액 본인 부담)** : 결핵(경피용), 로타바이러스

➤ 접종기관 및 지원비용

- 보건소 및 전국 1만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 접종비용 전액 지원
 -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 기타 서비스

- 정기예방접종 대상자 부모에게 자녀의 다음접종 및 누락접종 안내 서비스 제공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등을 통해 올바른 전문정보 제공
- 예방접종내역 조회 및 예방접종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 제공
 -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
 - ➔ 민원24(<https://minwon.go.kr>)에서 온라인 무료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지원절차



➤ 문의처 : 보건보건복지콜센터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예방접종도우미 : <http://nip.cdc.go.kr>

➤ 서식/자료 : 2018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2018년 표준예방접종일정표(소아용)

	대상전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횟수	0개월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9~23 개월	24~35 개월	만4세	만6세	만11 세	만12세
국가 예방 접종	결핵	BCG(피내용)	1	1회													
	B형간염	HepB	3	1차	2차			3차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5			1차	2차	3차		4차				5차			
		TdaP	1													6차	
	폴리오	IPV	4			1차	2차	3차						4차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4			1차	2차	3차	4차								
	폐렴구균	PCV	4			1차	2차	3차	4차								
		PPSV	-									고위험군에 한해 접종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2						1차				2차				
	수두	VAR	1						1차								
	A형간염	HepA	2						1~2차								
	일본뇌염	IJEV (불활성화 백신)	5						1~2차			3차		4차			5차
		LJEV (약독화 생백신)	2						1~2차			3차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HPV	2														1~2 차
	인플루엔자	IIV	-						매년접종								
기타	결핵	BCG(경피용)	1	1회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RV1	2			1차	2차										
		RV5	3			1차	2차	3차									



아동·청소년 이용하기



1

불소용액 양치

※ 올바른 칫솔질에 의해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는 한편 불소용액 양치를 통한 치아 우식증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생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 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서비스

➤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 제12조, 구강보건법시행령 제11조,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23조

➤ **지원대상**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전체학생

※ 사업대상을 우선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되, 보건소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를 방문하는 지역사회 주민, 경로당, 초·중·특수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업 가능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에 지속 실시
- 사업방법 : 불화나트륨용액 사용
- 불소용액 양치 지도
 - 보건(지)소 및 학교구강보건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지도
 - 정기적인 학교방문으로 효율적인 사업 실시
 - 양치시설을 설치한 학교에 대하여 불소용액양치사업 병행 실시
- 지자체 자체 불소용액양치사업
 - 보건(지)소 내소자 및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 **신청절차**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서식/자료** :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구강보건)

2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암환자 및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을 진단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지원으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인 소아 암환자 중 환아가구의 소득재산조사에서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이 지역별 · 가구규모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의 300%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제외대상 :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2018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006,526	3,416,516	4,419,780	5,423,042	6,426,305	7,429,568	8,432,831	9,436,093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2018년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03,262원씩 증가

2018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10,118,128	243,930,849	267,989,928	292,048,977	316,108,029	340,167,108	364,226,157	388,285,20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4,059,049원씩 증가

※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지원범위 및 항목

-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항목
 -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희귀의약품 구매비, 기타(담당의사 소견서가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한 항목)
- 지원금액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해당연도 진료비 중 백혈병 연간 최대 3천만원,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천만원(조혈모세포이식시 연간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 한도내 지원

➡ 신청기간 : 분기 내 신청,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

-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연도에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자체 조정 관리

➡ 신청절차 : 암환자 주소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연중 접수)

구분	암환자(보호자) 신청 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 시
필수서류	•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 1부 • 진료내역서(진료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해당자 선택	•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 서식/자료 : 2018년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3

저소득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 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어린이의 안과수술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에 준하는 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대상질환

-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 만 10세까지만 지원

➔ 지원범위

- 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 수술 전 · 후 치료목적의 안경(연 2회)
※ 특수처방안경 : 10만원, 일반처방 안경 : 5만원
※ 지원제외 : 눈 수술과 관련 없는 치료 및 입원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



➡ 유의사항

- 수술 받기 한 달 전에는 접수가 되어야만 진행이 가능
※ 지원결정 전에 받은 수술 건 지원 불가함
- 수술병원 : 상담 후 환자가 희망하는 안과 병 · 의원
※ 개안수술지원신청서상에 수술희망병원명과 전화번호 필수 기입

➡ 지원절차

- 서류발송(보건소) ▶ 서류접수, 수술자상담(한국실명예방재단) ▶ 지원 타당성 검토 ▶ 지원결정 개별통보 ▶ 수술진행
※ 구비서류 : 개안수술지원신청서(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진료소견서 및 기타 서류

구분	구비서류
수급자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프로필양식
차상위 의료경감 대상자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정보제공동의서, 차상위 의료경감대상자 증명서, 개안수술지원신청서, 프로필양식
차상위계층 대상자 건강보험 대상자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자동차 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 가액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프로필양식

➡ 문의처 : 한국실명예방재단

➡ 관련사이트

- 한국실명예방재단 : www.kfpb.org

➡ 서식/자료

- 2018년 모자보건사업안내
- 2018년 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안내

4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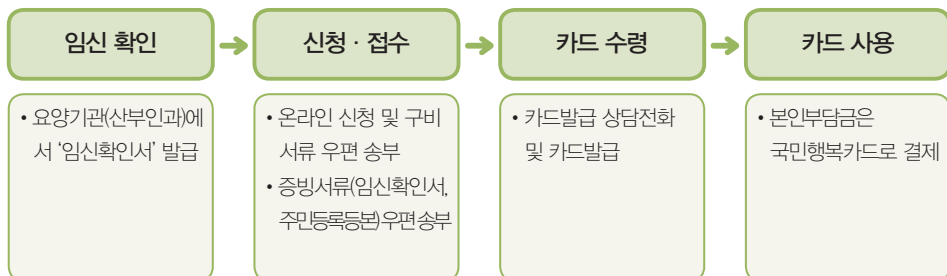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 연령은 “임신헌인서”상 ‘임신헌인일’ 기준으로 만 18세까지 이며, 소득 · 재산 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 · 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절차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접속 →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해당 카드사 지정 선택

※ 신청 구비서류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담당자 (우편번호) 04554

➡ 문의처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0133

➡ 서식/자료 : 2018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 ⌘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학생건강검사의 대상이 아닌 비취학 청소년에게 건강진단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형평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
(일반 중고등학생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자체검진 실시 중)

➡ **서식/자료** : 만 15세~18세 비취학 청소년

※ 대안학교 재학생 및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 아동보호치료시설 입소아동 및 수용시설 포함

➡ **지원내용**

- 문진 및 일반건강상태 검사
- 혈압측정 및 신체 계측
- 혈액검사(B형간염항원, 혈색소, 혈당, 간기능, 총콜레스테롤 등 6종)
- 흉부 방사선 검사
- 구강검사 및 상담

➡ **검사비용** : 본인 부담 없음

➡ **실시절차**

- 보건소 신청 ▶ 건강진단 확인서 발급 ▶ 보건소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검진 실시
▶ 15일 이내 결과 통보

6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인생의 전환기인 여성 청소년에게 상담과 진찰,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2세 여성 청소년(2005.1.1.~2006.12.31. 출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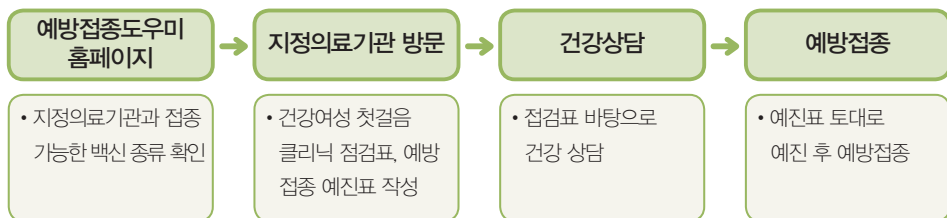
※ 2003년 생은 2016.12.31, 2004년생은 2017.12.31, 2005년생은 2018.12.31. 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접종일로부터 24개월 하루전까지 2차 접종 비용지원 가능

※ 단, 사업시행일(2016.6.20.) 이전 1차 접종 완료자는 2003년생 2018.6.30, 2004년생, 05년생 2018.12.31, 2006년생 2019.12.31.까지 지원

➔ **지원내용**

-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 상담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제공
 - ➔ 건강상담비(초진진찰료)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 지원
 - ※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제공
 -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보건소에서만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 가능
- 지원백신 : 가다실, 서바릭스
 - ※ 가다실 9 제외
- 상담내용 : 사춘기 성장발달 및 초경 관련 건강 상담

➔ **신청절차**



➔ **문의처**

- 전국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관리과 ☎043-719-6848~6850
- 질병관리본부 ☎1339
- 보건복지콜센터 ☎129

➔ **관련사이트** : 예방접종도우미 : <http://nip.cdc.go.kr>

➔ **서식/자료** : 2018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성인 이용하기

1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포함)

※ 일반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

➔ 근거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

➔ 지원대상

구분	대상	시행주체(시행방법)
의료급여수급권자	- 일반건강검진 - 만 19~64세 세대주 - 만 40~64세 세대원 -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시·군·구 보건소 (위탁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적용자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40세 이상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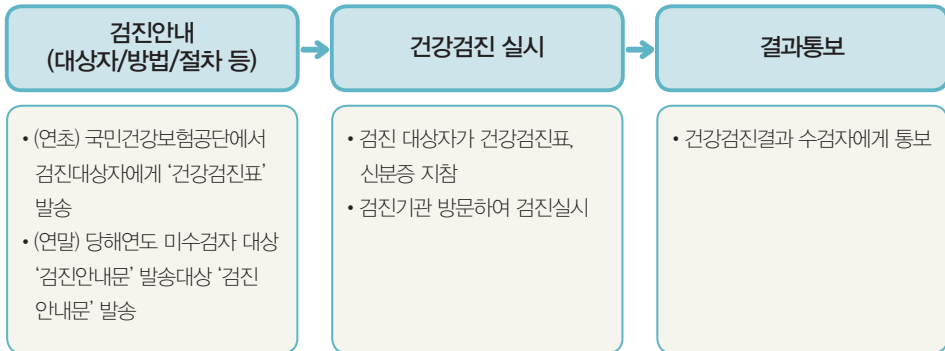
당해연도 대상자 선정 · 관리

- 당해연도 대상자는 2018.1.1일자 기준으로 선정
 - 전년도 11월말 기준으로 대상자를 우선 선정, 이후 12월 중 변동사항을 최종 반영
- 사업기간 중 건강보험적용자와 의료급여수급자 간 자격변동이 있더라도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의 자격으로 검진 실시
- 개인종합검진, 입원, 치료 등으로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 탈북자 또는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 대상자 추가등록

➔ 검진주기

-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 · 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 · 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연령에 실시

➔ 이용절차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 관련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s.or.kr>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2018년 건강검진사업안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중증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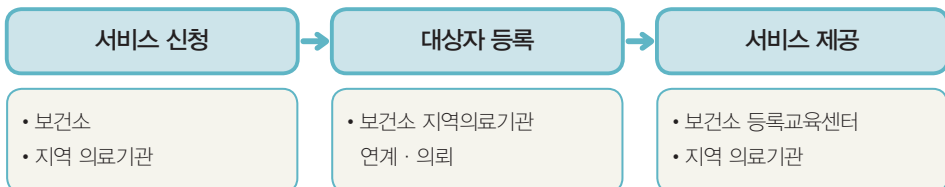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공단에서 연계받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보건소 내 진료실(환자, 전단계), 맞춤형건강관리사업 연계,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환자 중 주기적인 교육 및 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자
- 그 외 지역의 심뇌혈관질환자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역사회 홍보사업	• 중앙-지역 참여 합동 캠페인, 지역매체 홍보, 건강강좌 개최, 교육 등
환자 조기발견 사업	• 혈압 · 혈당 · 콜레스테롤 알기 캠페인, 보건기관 내소자에 대한 혈압 · 혈당 · 콜레스테롤 측정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 등록관리사업	• 고혈압 · 당뇨병 · 이상지질혈증 환자 교육(개별 상담 교육 또는 교실 참가), 보건소 진료환자의 경우 의료진을 통한 적절한 처방(생활습관교정치료 또는 약물처방) • 방문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한 만성질환자 지속 관리

➔ **신청절차**

- 환자등록관리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민간 병원 진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청
- 교육 및 상담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서식/자료** :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3

건강위험요인 개선 맞춤형 영양관리

비만 및 만성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주민 대상의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유도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지역주민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희망자
 - 보건소 의사 등 의사검진에 의해 건강위험군 또는 질환관리군으로 진단된 자
 - 건강위험군으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보건소에 내소하여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 단, 보건소 실정에 따라 필요 시 기타 연령에 대해서도 서비스 가능

• 대상자 구분 기준

대상자 구분	구분 기준
건강군	• 건강단계 선정 기준에 따라 항목 모두 '건강'으로 판정되었으나 서비스를 희망한 자
건강위험군	• 검진·검사결과 '건강위험'요인 7개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질환관리군	• '질환의심' 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또는 의사의 확진을 받거나 치료제를 복용중인 경우

➔ 지원내용

-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형 영양상담
 - 식품섭취조사를 통한 식생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향 맞춤형 상담
 - 비만개선, 혈당관리, 혈압관리, 혈중지질관리를 위한 영양상담
-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프로그램 운영
 - 건강위험요인별(당뇨, 고혈압, 비만 등) 집단 영양교육 실시
 - 비만 및 만성질환 관리는 신체활동 교육과 연계 서비스 제공
 -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연계(해당 보건소만 실시)

➔ 서식/자료 :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 생애주기 · 생활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신체활동 실천인구 및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 지원내용

사업영역		세부사업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아동 및 청소년	- 성장기 올바른 신체활동 습관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과체중 · 비만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학교 · 지역아동센터 등 생활터에 접근,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돌봄교실 비만예방 프로그램 제공
	성인	- 직장인 대상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비만 성인 대상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직장인 틈새시간활용 신체활동 프로그램 및 내소 성인여성 비만프로그램 등
	노인	- 노인 일상생활 기능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 낙상, 관절염, 요통 등의 노인 질환과 관련된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 치매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개인별 신체활동 증진서비스		-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개인별 신체활동 상담 서비스 - 일상생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연계 제공 - 개인 체력 및 신체구성 측정결과 기반 1:1 운동처방 서비스

☞ 서식/자료 :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신체활동)

- ☞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건강인식을 제고하여 자가 건강관리능력의 향상 및 건강상태를 유지·개선하기 위한 서비스

➡ 지원대상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건강위험군, 질환군)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

순위	대상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순위	차상위 계층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4순위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외 의뢰자 등

※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 우선순위 기준에 적용되는 대상 중 특히 독거노인(65세 이상), 노인부부세대(75세 이상)를 우선 선정(지역 여건 등에 따라 0세(0~12개월)인 자도 포함)

• 대상자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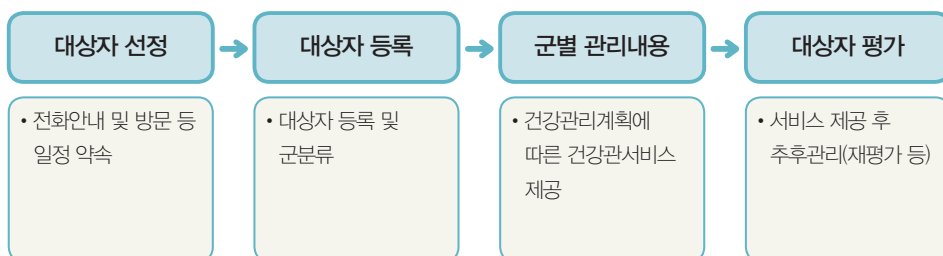
군	대상자 특성	군별 세부사항
집중관리군 (2~4개월 동안 6~10회 방문) 필요시 전화 상담가능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경우	• 관절염, 뇌졸중, 암 등록자로 흡연·고위험음주·비만·신체활동 미실천 중 2개 이상의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 • 임부 또는 분만 8주 이내 산부, 출생 4주 이내 신생아, 영유아, 다문화가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 • 허약노인 판정점수가 4~12점 • 북한이탈주민으로 감염성 질환이 1개 이상 이거나, 흡연·고위험음주·비만·신체활동 미실천 중 2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 ※ 장애인(기능평가 MBI 49점 이하)으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뇌졸중, 암 질환이 있는 경우 ※ 암 대상자로 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정기관리군 (2~3개월에 1회 이상 방문) 필요시 전화 상담가능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위험군)	• 관절염, 뇌졸중, 암 등록자로 흡연·고위험음주·비만·신체활동 미실천 중 1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 • 북한이탈주민으로 흡연·고위험음주·비만·신체활동 미실천 중 1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 ※ 장애인(기능평가 MBI 50점 이상)으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뇌졸중, 암 질환이 있는 경우 ※ 암 대상자로 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군	대상자 특성	군별 세부사항
자지역량지원군 (4~6개월에 1회 이상 방문) 필요시 전화 상담가능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정상군)	• 질환은 없고, 흡연·고위험음주·비만·신체활동 미실천 중 1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 • 기타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지원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 건강관리 모니터링	• 대상자 모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본 건강관리	• 대상자 모두
	건강행태개선	•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 결과 '정상B'인 대상자 •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 결과 건강문제(질환의심, 유질환자)가 있는 대상자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심·뇌혈관질환 등)
	생애주기별 건강문제관리	• 신생아·영유아, 임부, 산부, 성인, 노인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재활관리	• 재가 장애인

➔ 지원절차



➔ 서식/자료 :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방문건강관리)

6

지역사회중심 재활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방문재활이 필요한 1~3급 중증 장애인
- 조기퇴원 등으로 장애등급 받기 전 상태로 법적 장애등록이 안된 장애인
- 당해연도 신규등록 중증 장애인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

➡ 지원내용

-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퇴원과정, 퇴원직후의 정보수집, 재활계획수립, 의사결정, 직업 재활이나 진로, 건강문제해결, 사례관리 등)
- 대상자별 장애상태별 재활서비스 제공

영역	세부영역	세부프로그램
건강관리증진 (필수)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거동불능장애인 방문재활, 이동가능장애인 재활교실, 의료기관과의 통합협력 서비스
독립성 향상 (선택)	장애인 사회참여	• 자조모임 및 상담, 가족지지, 재활스포츠/레크레이션, 여가·문화지원
사회통합서비스 (선택)	자원연계	• 건강검진 지원서비스, 보조기기 지원서비스, 가옥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장애인운전자원서비스, 인적 자원 연계, 보건소 내 연계 서비스
	장애발생 예방	• 장애발생예방 교육(전국민대상), 장애체험 교육

➡ 서식/자료 :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지역사회중심재활)

- ☞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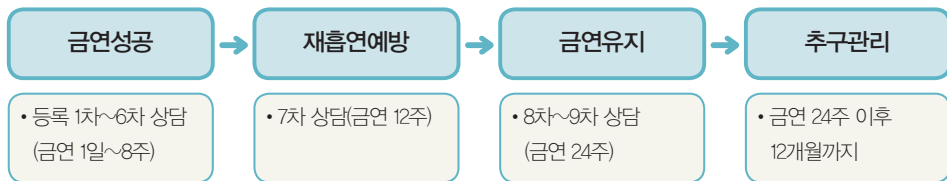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 주민등록상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상담서비스 제공	• 6개월간 9차 상담서비스 운영 - 상담방법: 내소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 상담강도: 1회 10분 이상, 9회 이상 상담 실시 ※ 대면상담 시 CO 또는 코티닌, 혈압 측정 필수 • 6개월 서비스 이후 추가 6개월 추구관리 실시
니코틴보조제 제공	• 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전문의약품 제공	• 부프로피온 서방정, 바레니클린(필요시 처방)
행동강화 물품	• 운동용품(축구공, 줄넘기, 지압봉 등) •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금연보조제 • 영양보충을 위한 영양상담 및 식사교육 연계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 1인당 최대 5만원 이내 제공 ※ 3회 이상 대면상담, CO 또는 코티닌 측정 확인 후 제공

➡ **지원절차**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관련사이트**

- 금연두드림 : <http://nsk.khealth.or.kr/>
- 금연길라잡이 : <http://www.nosmokeguide.or.kr>
- 금연상담전화 : <http://quitline.hp.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금연)

- ▣ 지역사회 중심의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알레르기 질환 환자 조기 발견 및 적정치료, 지속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 **지원대상** : 지역주민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동 및 청소년	•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환아 선별 실시 및 관리 • 천식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천식응급키트 비치) - 벤톨린(기관지확장제)은 학교 보건실에 비치 •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대상자별 교육,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홍보지원
성인	• 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 환아 치료 및 관리 - 환아 개별위험 요인 및 응급상황 •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교육 - 지역사회 순회 주민건강강좌 개최,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교실(자조모임) 운영 • 지역사회 각종 행사 및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홍보관 운영 등

➡ **관련사이트**

- 질병관리본부 : <http://www.cdc.go.kr>
-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홈페이지 : <http://www.kaaf.org>
- 서울특별시 아토피 · 천식교육정보센터 : <http://www.atopyinfocenter.co.kr>
- 부산광역시 아토피 · 천식교육정보센터 : <http://www.allergyinfo.or.kr>
- 광주광역시 아토피 · 천식교육정보센터 : <http://www.gjatopy.or.kr>
- 경기도 아토피 · 천식교육정보센터 : <http://www.e-allergy.org>
- 강원도 아토피 · 천식교육정보센터 : <http://gwallergy.or.kr>
- 경상북도 아토피 · 천식교육정보센터 : <http://www.eduinfo-allergy.com>

➡ **서식/자료** :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관련 문제에 대해 한의학 기술을 사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각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 건강위험요인 또는 건강관련 문제가 있는 지역주민

➡ 지원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 사상체질, 기공체조, 한방양생, 한의과진료(침, 뜸, 부항, 상담, 향기치료, 한약제제, 의료비 지원 등), 기타(한방마사지, 요가, 물리치료, 재활요법 등) 등

구분	주대상(부대상)	표준프로그램
영유아	만 5세 이하 영유아 (성인 : 보호자 및 보육교사)	• 허약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 전통육아, 면역력 강화, 알레르기 질환 예방
청소년	소아 · 청소년 : 초 · 중 · 고등학생 (성인 : 보호자 및 담당교사)	• 스마트폰 · 인터넷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 - 스트레스 관리, 중독예방, 자세교정, 정신건강 관리
임산부	임산부(성인 · 노인 : 보호자)	• 마미든든 - 산전산후 관리, 산후풍과 산후 우울증 예방
성인	성인 : 20~64세(노인 : 65세 이상)	• 갱년기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2018년 시범사업 예정)
노인	노인 : 65세 이상(성인 : 보호자)	• 총명한 백세 - 치매 · 중풍 · 우울증 예방 교육, 기공체조를 통한 관절질환 예방
취약계층	각 생애주기별 다문화,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주민(각 생애주기별 : 보호자)	• 지역사회동센터 방문 검진프로그램 - 아동 건강상태(성장) 검진, 한의학 건강관리 교육 • 장애인대상 프로그램(2018년 시범사업 예정)

- ➡ 서식/자료 :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한의학 건강증진)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과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

☞ 근거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 지원내용

- 자살예방사업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시스템 개발, 자살예방교육, 게이트키퍼 교육, 사례관리 등
-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 지역특성화 중증정신질환관리시스템 효과성 평가 연구,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
-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인식 개선사업 수행 등
- 정신건강증진사업
 - 우울증 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 중독관리사업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1577-0199)

☞ 신청 및 상담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한국자살예방협회 : <http://suicideprevention.or.kr>
- 생명의 친구들 자살예방상담 : <http://www.counselling.or.kr>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약사회 : <http://www.onmaum.com>

☞ 서식/자료 : 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 근거법령 : 암관리법, 암관리법 시행령, 암관리법 시행규칙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17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2012. 11월 부과기준)
 -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94,000원 이하
 -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89,000원 이하(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 * 소득월액보험료 : 사업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 초과 시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별도 부과
- ※ 단, 대상자 선정 시 보험료 산정 기준 초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경우 등은 소급하여 보험료가 당시의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절차를 거쳐 추가 등록

➔ 지원내용 :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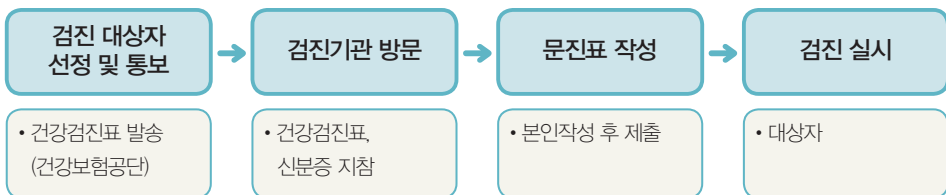
-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의 대상자(공단의 암검진 대상자)의 경우 수검자가 검진비용의 10%를 부담하는 형태로 위암, 간암, 유방암 검진 가능
-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 공단 암검진 대상자까지 무료로 검진 가능

암종별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간격	• 기본검사 : 위내시경검사 실시(단, 위내시경검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추가검사 : 조직진단 실시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대장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검진 유예 - 국가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는 대장내시경 수검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검진대상 유예	1년 간격	• 기본검사 : 분별잠혈검사 • 추가검사 : 대장내시경검사 실시(단, 대장내시경검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	• 기본검사 :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	• 기본검사 : 자궁경부세포검사
간 암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기준을 충족한 경우 - 간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간암검진 대상 유예 -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6개월 간격	• 기본검사 :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 신청방법

- 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암 검진기관 방문

➔ 이용절차



➔ 문의처 :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 관련사이트

- 국가건강정보포털 : <http://health.mw.go.kr>
- 국가암정보센터 : <http://www.cancer.go.kr>

➔ 서식/자료 : 2018년 국가 암검진 사업안내

☞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이며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2018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
폐암 환자	- 기본검사 : 분변잠혈검사 - 추가검사 - '잠혈반응 있음' : 대장내시경검사 실시(비용지원), 대장이중조영검사(선택) - 대장이중조영검사 실시 후 판독소견 및 결과에서 '2.대장폴립, 3.대장암 의심, 4.대장암' 판정 시 조직진단 실시(비용지원)

※ 2017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8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0,000원 이하

※ 2018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91,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6,000원 이하



➡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 환자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 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5대 암종 • 위암(C16) • 간암(C220) • 대장암(C18-C20) • 유방암(C50) • 자궁경부암(C53)	• 기관지 및 폐의 원발성 악성 신생물(C34) - 상병코드 C34.0-C34.9에 해당
지원항목 (지원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신청방법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분	암환자(보호자)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시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환자용)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1부 • 진료내역서(진료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해당자 선택	• 입금통장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 관련사이트

- 국가암정보센터 : <http://www.cancer.go.kr>

➡ 서식/자료 : 2018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질환자

➡ 지원제외대상

- 외국국적자
 - ※ 단, 외국인 특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함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타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 ➔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정부지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때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함
 -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특정 기호) 확인만으로 선정함
-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의 일반원칙
 - ➔ 환자·부양의무자가구 기준과 소득·재산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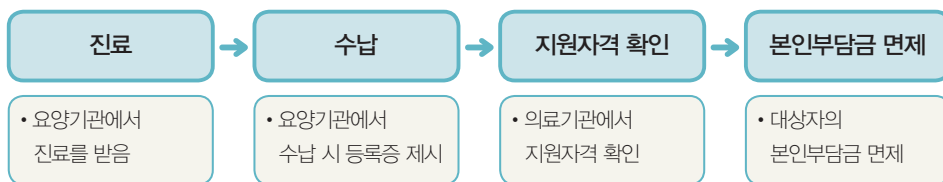
➡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는 아래 지원내역(①~③) 모두 신청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 지원내역 중 ②간병비, ③특수식이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지원제외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구분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133종)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33종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2 만성신부전 요양비 (N18)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3 보장구 구입비 (8종)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근육병(G12,G71), 다발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겐축적병(폼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 투스질환(G60.0), 길랭- 바레증후군(G61.0)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①-4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11종)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근육무력증(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 추가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 간병비(11종)		월30만원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리피드증(E75.2), 레드증후군(F84.2) 추가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
③ 특수식이 구입비 (7개 질환)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8세 이상

➔ **신청방법**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연중 수시접수)

➔ **지원절차**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 <http://129.go.kr>
-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 : <http://helpline.nih.go.kr>
- 국가건강정보포털 : <http://health.mw.go.kr>

➔ **서식/자료** : 2018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어르신 이용하기



1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및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 제3조 1항, 치매관리법 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 지원대상 : 지역내 거주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 사례관리대상자

➡ 지원내용

주요사업	지원내용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상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국가치매지원서비스 안내, 지역사회 의료·복지 서비스 안내,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일반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고위험군 집중검진, 치매 고위험군 인지 강화 교육 등
치매환자쉼터 운영	- 쉼터 제공 인지자극 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전체 이용자의 30%는 저소득층, 독거,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의 치매환자 우선배정)
치매가족 지원	-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의 가족 대상 - 치매환자가족 상담, 가족교실 운영, 치매가족 자조모임 지원, 치매가족 카페 운영(치매가족 휴게실 운영)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 지역주민 및 치매환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사업 - 치매 극복 주간 및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 행사, 치매인식개선 홍보,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운영
치매노인 성년후견	치매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자기결정권 존중, 인권보호를 위한 후견인 선임 지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란?

1. 치매증상이 있는 어르신임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2. 어르신 개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3. 인식표에는 안내기관 연락처와 고유번호만 보입니다.
4.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부착한 상태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중앙치매센터 ☎1666-0921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중앙치매센터 : <http://www.nid.or.kr>

➡ 서식/자료 :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2 치매검진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서비스

☞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 제11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9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지원대상

- 선별검사 대상자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대상자 : 만 60세 이상인 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업수행 절차

1단계	선별검사(MMSE-DS)	보건소
2단계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치매안심센터/협약병원
3단계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협약병원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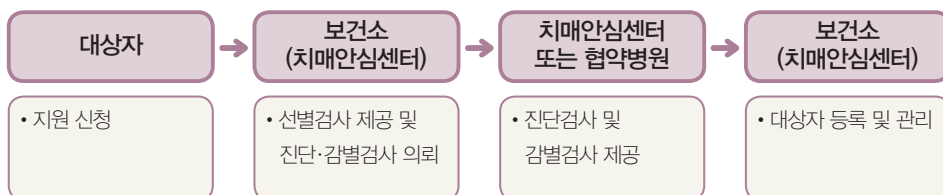
구분	대상 및 검사 내용
치매선별검사 (치매상담센터)	• 대상자 :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 받지 않은 모든 주민 • 검진주기 - 정기(선별검사 실시한 당해 연도부터 2년 마다 실시), 비정기(대상자의 급격한 상태 악화 등의 경우, 당해 연도라도 반복 검사 실시 가능) • 검진도구 :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지(MMSE-DS) •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 정상 : 서면, 전화 혹은 대면 설명으로 검진 결과 통보 - 인지저하 : 서면, 전화 혹은 대면 설명으로 검진 결과 통보 및 진단검사 안내 · 상담을 통해 검사 예약
치매진단검사 (협약병원)	• 대상자 :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노인 대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 검진도구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 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CERAD-K 제2판, SNSB II, LICA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행),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실시 •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 치매 : 원인(감별)검사 연계→원인 확진 후 등록 사업 연계→지속관리 - 경도인지장애 : 1년마다 진단검사 실시, 인지강화교실 연계 및 정보 제공 - 정상 : 2년마다 선별검사 실시, 치매예방교실 연계 및 정보 제공

구분	검사내용
치매감별검사 (협약병원)	• 대상자 :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검진도구 : 치매 원인규정을 위한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CT 두부) 등 실시 •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 검진 결과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내 사업 등 관련 사업 연계

➡ 지원범위

- 1인당 지원액 : 치매진단검사, 감별검사 비용
 - ➔ 진단검사(상한 8만원) : 진찰료, 치매척도검사비,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비 등 지원
 - ➔ 감별검사(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상한 11만원) : 치매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체계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① 치매조기검진 신청서, ②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신청서(검사비 지원 신청 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검사비 지원 신청 시)

➡ 서식/자료 :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서비스

➡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중 대상자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상자 선정기준(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 초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 반드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 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 유지
 -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대상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보상제 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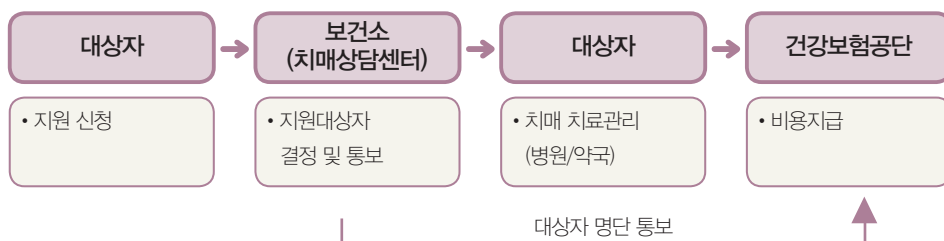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약제비용 : 처방약에 주성분이 도네페질(Donepezil), 갈란타민(Galantamine), 리바스 티그민(Rivastigmine), 메만틴(Memantine)인 치매치료약이 1개 이상 포함되거나,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고 상기 치매 치료약 또는 주성분이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인 약이 1개 이상 포함되면 지원
 - ※ 치매 치료약 해당 여부는 매월 업데이트되는 '약제급여목록표'에서 반드시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자료공개

-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은 비급여 항목(상급 병실료, 특진료 등)을 제외한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 비용만을 지원
- 지원수준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 ※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②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③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신청절차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중앙치매센터 ☎1666-0921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중앙치매센터 : <http://www.nid.or.kr>

➡ 서식/자료 :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4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 치주질환 발생이 가장 많은 노인들에게 스케일링 또는 전문가 치면세정술을 통해 잇몸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불소도포를 하여 치근면 우식예방 및 시린이를 방지하는 서비스

☞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 제 15조, 구강보건법시행령 제15조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

☞ 지원내용 :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방법

• 치주치치방법 : 스케일링 또는 전문가 치면세정술

→ 스케일링 : 치아의 동요도가 없는 경우

→ 전문가 치면세정술 : 치아의 동요도가 있는 경우

• 불소도포방법 : 치아에 직접 도포, 트레이, 이온도포기 이용 도포

→ 치아 직접 도포 : 치아수가 적은 경우(10개 이내)

☞ 서식/자료 :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구강보건)



☞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하기 위한 서비스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제1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틀니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지원내용

• 틀니

구분	지원내용
틀니	•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노인틀니 사후 유지관리	• 급여조건 - 틀니 최종 장착 후 무상보상기간(3개월 이내 6회)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 - 각 행위별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 - 틀니 유지관리 행위별 연간 급여횟수는 1악당을 기준으로 함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구분	지원내용
치과 임플란트	•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 중복급여 :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
재시술 및 유지관리	• 재시술 : 2단계 시술실패시 같은 치식번호에 1회 한하여 재시술 가능, 등록번호 재부여 • 유지관리 1.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동기간 내는 유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 2.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함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요양기관정보마당 ☎1577-1000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요양기관정보마당 : <http://medi.nhis.or.kr>

➡ 서식/자료 : 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를 도모하는 서비스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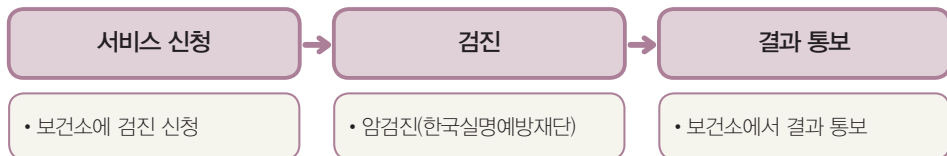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은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지원내용

구분	검진항목
1차진단(1종)	• 정밀 안저검사(양측)
2차진단(4종)	• 정밀 안저검사(양측) •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처방전 교부포함) • 안압검사 • 각막곡률검사

➔ 신청절차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처

- 한국실명예방재단

➔ 관련사이트

- 한국실명예방재단 : <http://www.kfpb.org>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2018년 개안수술비 지원안내

7

노인 개안수술 지원

☞ 저소득층 노인에게 개안수술을 지원하여 안질환 적기 치료를 통해 실명 예방 및 시력 유지를 도모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과 상관없이 우선순위로 지원

2018년도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31,599	53,474	69,711	84,887	100,955	116,936	131,976	147,490	163,172
	(33,931)	(57,474)	(74,856)	(91,152)	(108,405)	(125,566)	(141,716)	(158,375)	(175,214)
지역 가입자	7,946	27,773	56,874	85,412	108,657	131,825	150,960	167,711	184,310
	(8,532)	(29,823)	(61,071)	(91,715)	(116,676)	(141,554)	(162,101)	(180,088)	(197,912)
혼합	33,048	54,093	70,459	85,881	102,190	118,354	133,811	149,745	165,762
	(35,487)	(58,085)	(75,659)	(92,219)	(109,732)	(127,089)	(143,686)	(160,796)	(177,995)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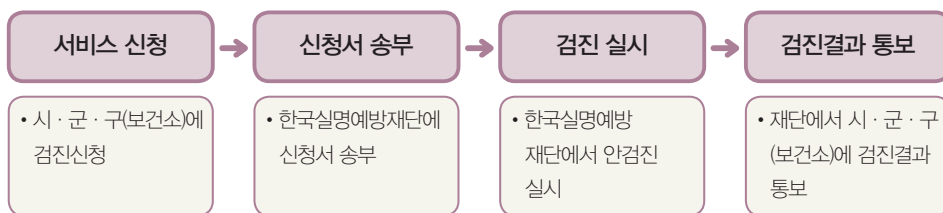
구분	검진항목
지원 범위	• 안과수술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 ※ 단, 입원비는 일반기준(5-6인실)으로 지급, 환자 식대 포함
지원 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 퇴원 후 통원치료비 및 공문시행일 이전의 검사비 • 백내장 선택진료비(단, 망막질환 · 녹내장은 지원) • 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안과 이외 타과검사비)치료 및 입원료 • 특수렌즈(난시교정용 렌즈 등), 보호자 식대, 65세 이상 등 정액

➡ 문의처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노인개안수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 복지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절차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달 기간 소요(망막 수술의 경우 별도), 지원결정은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환자에게 통보 해드리며, 지원결정 전에 수술을 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

※ 수술지원 통보 후 유효기간 3개월 이내로 수술 진행

※ 구비서류 : ①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② 안과 진료소견서(수술병원의 소견서 첨부) 1부,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일반 저소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1부(최근 3개월분)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 문의처

- 한국실명예방재단

➡ 관련사이트

- 한국실명예방재단 : <http://www.kfpb.org>
- 보건복지부콜센터 :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지원대상

- 시·군·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 단, 2017년 수검자 중 건강한 자 및 아래 대상자는 제외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으로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수검 가능
- 기타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1차 건강진단 항목 : 기본진료, 혈액검사, 기타검사(요검사, 안검사, 간이인지기능검사, 흉부 X선 간접촬영)
- 2차 건강진단 항목 : 기본검사, 흉부질환 기타 흉부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질환, 안질환, 치매, 골다공증 검사, 낙상검사
 - ※ 매독, 임질, 톨라미디아감염증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실시
 - ※ 임질과 클라미디아감염증의 경우 소변검체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에서만 실시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서식/자료 :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노인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서비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1953.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적용

➔ 지원내용

접종시기	• 연중 무료접종가능
접종백신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PPSV23) 0.5mL
접종횟수	• 1회 접종 - 65세 이후에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PPSV23)을 접종한 경우, 추가접종 불필요 - 65세 이전에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PPSV23)을 접종한 경우, 이전 접종으로부터 5년 경과 및 65세 이후 1회 접종

* 금기사항 : 백신 함유 성분이나 이전 접종 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중등도 이상의 급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접종 연기

※ 가벼운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은 백신접종 금기사항이 아님

➔ 접종기관 : 보건소(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 포함)

➔ 문의처

- 전국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질병관리본부 ☎1339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48~6850

➔ 관련사이트

- 예방접종도우미 : <http://nip.cdc.go.kr>

➔ 서식/자료 : 2018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1 제증명 발급

➔ 온라인 발급가능 제증명 종류

- 건강진단서 (국문)
- 건강진단서 (영문)
- 진료비 납입 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국문)
- 예방접종증명서 (영문)
- 채용신체 검사서
- 건강진단결과서
- 2차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 수수료 결제 및 방법은 보건소마다 상이할 수 있음

제증명 발급 등 민원서비스를 보건소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보건소 홈페이지 혹은 공공보건포털 <http://phi.mw.go.kr/>)을 통해
발급 신청 및 출력 가능



② 의약업무 관련 허가·신고·등록

구분	민원사무명
허가	•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 허가(허가받은 사항 변경) • 대마재배자의 허가(허가받은 사항 변경) •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허가(허가받은 사항 변경)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 허가 •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또는 변경허가(지정) 신청 • 의약품도매상 허가 • 의약품 판매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고	• 의료기관이 아닌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산후조리업 개설·폐업·휴업·재개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신고 •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신고 사항 중 중요한 사항 변경)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중앙회가 분회 설치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 신고(개설에 관한 신고 중 중요사항 변경) • 부속 의료기관 개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 의료업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 등록사항 변경 또는 폐업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 • 구급차 등 운영 신고(신고 후 중요사항 변경) • 약국(의약품판매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 재개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시 제조하려는 품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업무 폐업 또는 휴업, 휴업이후 업무 재개 •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 도매상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 의약품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 의약품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또는 변경·폐지 신고 •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 또는 재개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신고(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 변경)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폐지·휴지 또는 재개 •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 •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 또는 변경사항 신고 • 의료기기 영업·휴업·폐업 등 신고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신고 • 소독업 신고(신고한 사항 변경) • 소독업을 30일 이상 휴업, 폐업 또는 재개 • 응급장비 설치·양도·폐기·이전 신고 • 마약류 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마약류(원료) 양도 승신신청 •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신고
등록	•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 • 약국 개설 등록(등록된 사항 변경)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등록한 사항 변경)

➡ 식품 · 공중위생업소 허가 · 신고 · 등록

구분	민원사무명
허가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허가(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 변경)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 허가(허가 받은 사항 변경)
신고	• 공중위생 영업 및 변경 • 공중위생업자 지위 승계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허가받은 사항의 경미한 변경 또는 폐업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영업 또는 변경 신고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지위 승계 • 식품제조 ·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한 사항의 경미한 변경 또는 폐업 • 식품위생 폐업 신고 • 식품판매 자동판매기 신고 •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설치 · 운영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등의 영업 신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폐업 또는 변경
등록	• 식품제조 ·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 등록(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 변경)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 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 가공하는 경우(보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 변경)

※ 신고서 및 신청서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민원24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한 민원 업무도 있음



03 보건소 위치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시·도	보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서울 (25)	강남구	06088	선릉로 668	02)3423-7200	http://health.gangnam.go.kr
	강동구	05397	성내로 45	02)3425-8500	http://health.gangdong.go.kr
	강북구	01145	한천로 897	02)901-7600	http://www.ehealth.or.kr
	강서구	07560	공항대로 561	02)2600-5800	http://www.gangseo.seoul.kr/site/health/index.jsp
	관악구	08832	관악로 145	02)879-7010	http://www.gwanak.go.kr/site/health/main.do
	광진구	05026	자양로 117	02)450-1114	http://www.gwangjin.go.kr/health/index.jsp
	구로구	08299	구로중앙로 28길 66	02)860-2600	http://www.guro.go.kr/health
	금천구	08611	시흥대로 73길 70	02)2627-2422	http://bogunso.geumcheon.go.kr
	노원구	07689	노해로 437	02)2116-3115	http://www.nowon.kr/health
	도봉구	01395	방학로 3길 117	02)2091-4600	http://health.dobong.go.kr
	동대문구	02565	천호대로 145	02)2127-5365	http://health.ddm.go.kr/
	동작구	06963	장승배기로 10길 42	02)820-1423	http://healthcare.dongjak.go.kr
	마포구	03937	월드컵로 212	02)3153-9020	http://health.mapo.go.kr/
	서대문구	03718	연희로 242	02)330-1801	http://health.sdm.go.kr/
	서초구	06750	남부순환로 2584	02)2155-8114	http://health.seocho.go.kr/
	성동구	04706	마장로 23길 10	02)2286-7000	http://bogunso.sd.go.kr/
	성북구	02751	화랑로 63	02)2241-1749	http://bogunso.seongbuk.go.kr
	송파구	05552	올림픽로 326	02)2147-3450	http://ehealth.songpa.go.kr
	양천구	08095	목동서로 339	02)2620-3912	http://health.yangcheon.go.kr
	영등포구	07260	당산로 123	02)2670-3114	http://www.ydp.go.kr/health/
	용산구	04390	녹사평대로 150	02)2199-8012	http://health.yongsan.go.kr/
	은평구	03384	은평로 195	02)351-8114	http://health.ep.go.kr
	종로구	03153	자하문로 19길 36	02)2148-3520	http://health.jongno.go.kr
	중 구	04611	다산로 39길 16	02)3396-5555	http://www.junggu.seoul.kr/health/
	중랑구	02043	봉화산로 179	02)2094-0712	http://health.jungnang.go.kr/

❖ 부산광역시

시·도	보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부산 (16)	강서구	46720	공항로 811번 가길 10	051)970-3415	http://www.bsgangseo.go.kr/health/main.do
	금정구	46274	중앙대로 1777	051)519-5051	http://www.geumjeong.go.kr/health/index.geumj
	남구	48452	못골로 23	051)607-6460	http://health.bsnamgu.go.kr
	동구	48781	구청로 1	051)440-6500	http://health.bsdonggu.go.kr
	동래구	47741	명륜로 187번길 56	051)555-4000	http://health.dongnae.go.kr
	부산진구	47357	황령대로 8번길 36	051)645-4000	http://health.busanjin.go.kr
	북구	46528	금곡대로 348	051)309-4500	http://health.bsbukgu.go.kr/
	사상구	46985	학감대로 242	051)310-4791	http://www.sasang.go.kr/health/
	사하구	49432	하신번영로 127번길 2	051)220-5701	http://health.saha.go.kr
	서구	49233	부용로 30	051)242-4000	http://health.bsseogu.go.kr/
	수영구	48247	수영로 637-5	051)752-4000	http://www.suyeong.go.kr/health/main.asp
	연제구	47605	연제로 2	051)665-4781	http://health.yeonje.go.kr/health/main.do
	영도구	49011	태종로 423	051)416-4000	http://www.yeongdo.go.kr/health.web
	중구	48926	중구로 120	051)600-4741	http://health.bsjunggu.go.kr
	해운대구	48104	양운로 37번길 59	051)746-4000	http://health.haeundae.go.kr
	기장군	46077	기장읍 기장대로 560	051)709-4791	http://www.gijang.go.kr/health/index.gijang

❖ 대구광역시

시·도	보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대구 (8)	남구	42424	영선길 34	053)664-3601	http://nam.daegu.kr/open_content/mainpage/health/main
	달서구	42731	학산로 45	053)667-5611	http://www.dalseo.daegu.kr/healthcenter/
	동구	41143	동촌로 79	053)662-3201	http://www.dong.daegu.kr/health/
	북구	41550	성북로 49	053)665-3211	http://www.buk.daegu.kr/health/index.do
	서구	41777	국채보상로 257	053)663-3111	http://health.dgs.go.kr
	수성구	42086	수성로 213	053)666-3111	http://www.suseong.kr/health/
	중구	41901	태평로 45	053)661-3121	http://gu.jung.daegu.kr/healthcenter
	달성군	43003	현풍면비슬로 130길 17	053)668-3101	http://www.dalseong.daegu.kr/new/healthcenter/html/main.html

❖ 인천광역시

시·도	보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인천 (10)	계양구	21067	계산새로 88	032)430-7801	http://www.gyeyang.go.kr/clinic/
	미추홀구	22136	미추홀구 주안서로 25	032)880-5310	http://www.namgu.incheon.kr/clinic/
	남동구	21589	소래로 633	032)464-4001	http://www.namdong.go.kr/clinic/
	동구	22510	석수로 90	032)762-4001	http://www.icdonggu.go.kr/open_content/clinic/
	부평구	21359	부흥로 291	032)509-8200	http://www.icbp.go.kr/open_content/clinic/
	서구	22726	탁옥로 39번길	032)560-5000	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clinic/
	연수구	21915	함박외로 13	032)749-8000	http://www.yeonsu.go.kr/clinic/
	중구	22315	참외전로 72번길 21	032)760-6010	http://www.icjg.go.kr/health
	강화군	23037	충렬사로 26-1	032)930-4061	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clinic/
	옹진군	22193	남구 매소홀로 120	032)899-3128	http://www.ongjin.go.kr/clinic

❖ 광주광역시

시·도	보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광주 (5)	광산구	62430	광산로 29번길 15	062)960-8746	http://health.gwangsan.go.kr
	남구	61687	봉선로 1	062)607-4450	https://www.namgu.gwangju.kr/index.es?sid=a8
	동구	61466	서남로 1	062)608-3261	http://www.donggu.kr/index.es?sid=a7
	북구	61217	우치로 65	062)410-8961	http://health.bukgu.gwangju.kr/
	서구	61928	경열로 33	062)350-4108	http://www.seogu.gwangju.kr/health

❖ 대전광역시

시·도	보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대전 (5)	대덕구	34443	석봉로 38번길 55	042)608-5455	http://www.daedeok.go.kr/chc/CHC.do
	동구	34691	동구청로 147	042)251-6121	http://health.donggu.go.kr
	서구	35203	만년로 74	042)288-4500	http://www.seogu.go.kr/health/main.do
	유성구	34172	유성대로 730번길 51	042)611-5021	http://www.yuseong.go.kr/?page_id=10469
	중구	35011	산성로 63	042)580-2700	http://www.dijunggu.go.kr/html/health/

❖ 울산광역시

시·도	보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울산 (5)	남구	44698	삼산중로 132	052)226-2805	http://health.ulsannamgu.go.kr
	동구	44021	봉수로 155	052)209-4080	http://www.donggu.ulsan.kr/kor/health/
	북구	44248	산업로 1018	052)289-3450	http://www.bukgu.ulsan.kr/health/
	중구	44495	외솔큰길 225	052)290-4300	http://health.junggu.ulsan.kr
	울주군	44950	삼남면서향교 1길 67-12	052)204-2798	http://health.ulju.ulsan.kr

❖ 세종특별자치시

시·도	보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세종	세종시	30023	조치원읍 건강길 16	044)301-2000	http://health.sejong.go.kr

❖ 경기도

시·도	보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경기 (44)	고양시 덕양구	10460	원당로 33번길 28	031)8075-4014	http://www.goyang.go.kr/hospital/dy/index.do
	고양시 일산동구	10410	중앙로 1228	031)8075-4094	http://www.goyang.go.kr/hospital/is/index.do
	고양시 일산서구	10340	일중로 54	031)8075-4160	http://www.goyang.go.kr/hospital/iss/index.do
	과천시	13806	관문로 69	02)2150-3800	http://www.ghc.go.kr
	광명시	14303	오리로 613	1688-3399	http://health.gm.go.kr
	광주시	12739	파발로 194	031)760-2110	https://www.gjcity.go.kr/depart/contents.do?mld=0801000000
	구리시	11922	건원대로 34번길 84	031)550-8618	http://www.guri.go.kr/health/
	군포시	15887	군포로 221	031)461-5465	http://www.gunpo.go.kr/health/index.do
	김포시	10111	사우중로 108	031)980-5011	http://health.gimpo.go.kr
	남양주시	12232	경춘로 1037	031)590-2741	http://www.nyj.go.kr/main/1671
	남양주시 풍양	12066	진접읍 해밀예당 1로 30-39	031)590-4771	http://www.nyj.go.kr/main/1671
	동두천시	11344	중앙로 167	031)860-3372	www.ddc.go.kr/health/
	부천시	14575	옥산로 10번길16	032)625-4183	http://pubhealth.bucheon.go.kr
	성남시 분당구	13496	양현로 306	031)729-3990	http://bh.seongnam.go.kr
	성남시 중원구	13200	금상로 137	031)729-3930	http://www.jungwonhealth.or.kr
	성남시 수정구	13346	수정로 218	031)729-3870	http://sh.seongnam.go.kr
	수원시 권선구	16626	호매실로 22-50	031)228-6716	http://health.suwon.go.kr
	수원시 영통구	16703	영통로 396	031)228-8716	http://health.suwon.go.kr
	수원시 장안구	16295	송원로 101	031)228-5716	http://health.suwon.go.kr
	수원시 팔달구	16463	팔달산로 6	031)228-7716	http://health.suwon.go.kr
	시흥시	14904	호현로 55	031)310-5815	http://shhealth.go.kr

시·도	보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경기 (44)	안산시 단원구	15335	화랑로 250	031)481-2551	http://health.ansan.go.kr
	안산시 상록수	15585	차돌배기로 1길 5	031)481-5909	http://snshealth.ansan.go.kr
	안성시	17596	강변로 74번길 18	031)678-5710	https://www.anseong.go.kr/health/main.do
	안양시 동안구	14047	평촌대로 253번길 41	031)8045-4472	http://health.anyang.go.kr/
	안양시 만안구	14035	문예로 48	031)8045-3472	http://health.anyang.go.kr/
	양주시	11498	부흥로 1533	031)8082-7117	http://www.yangju.go.kr/site/health/main.do
	오산시	18132	경기동로 59	031)8036-6025	http://www.osan.go.kr/pub/health/
	용인시 기흥구	16969	신갈로 58번길 11	031)324-6911	https://www.yongin.go.kr/health/index.do
	용인시 수지구	16835	포은대로 435	031)324-8912	https://www.yongin.go.kr/health/index.do
	용인시 처인구	17019	중부대로 1199	031)324-4911	https://www.yongin.go.kr/health/index.do
	의왕시	16076	오봉로 34	031)345-3541	http://www.uiwang.go.kr/heal
	의정부시	11649	범골로 131	031)870-6001	http://www.ui4u.go.kr/health/
	이천시	17353	증신로 153번길 13	031)635-2400	http://health.icheon.go.kr
	파주시	10924	후곡로 13	031)940-4800	http://clinic.paju.go.kr
	평택시 송탄	17730	서정로 295	031)8024-6615	http://health.pyeongtaek.go.kr
	평택시 평택	17901	평택 5로56	031)8024-4319	http://health.pyeongtaek.go.kr
	포천시	11143	포천로 1612	031)538-3600	http://www.pocheon.go.kr/pbhlth/index.do
	하남시	12951	대청로 10	031)790-6555	http://www.hanam.go.kr/health/index.do
	화성시	18596	향남읍 3.1만세로 1055	031)369-2551	http://www.hscity.go.kr/health/index.do
	가평군	12413	가평읍 가화로 155-18	031)582-2488	http://www.gp.go.kr/health/index.do
	양평군	12546	양평읍 마유산로 17	031)770-3502	http://www.yphealth.net
	여주시	12628	여흥로 160번길 14	031)887-3601	http://www.yj21.net/health/
	연천군	11027	전곡읍 은대성로 95	031)839-4001	https://www.yeoncheon.go.kr/health/index.yeoncheon

❖ 강원도

시·도	보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강원 (18)	강릉시	25604	남부로 17번길 38	033)660-2018	https://www.gn.go.kr/phc/index.do
	동해시	25769	천곡로 100-2	033)530-2401	http://www.dh.go.kr/health
	삼척시	25929	척주로 76	033)572-4000	http://health.samcheok.go.kr
	속초시	24855	수복로 36	033)631-4000	http://www.sokcho.go.kr/portal/happysokcho/businessplace/healthcenter
	원주시	26417	원일로 139	033)737-4011	http://www.wonju.go.kr/health/index.do
	춘천시	24358	중앙로 135	033)250-3550	http://health.chuncheon.go.kr/user/index.php
	태백시	26027	태백로 905	033)552-4000	http://www.taebaek.go.kr/health/index.do
	고성군	24736	간성읍 수성로 30	033)681-4000	http://www.gwgs.go.kr/gs/health
	양구군	24522	양구읍 관공서로 42	033)480-2550	http://www.yanggu.go.kr/user_sub.php?pagecode=06_01_07_00_00
	양양군	25031	양양읍 양양로 9-5	033)670-2550	http://health.yangyang.go.kr
	영월군	26235	영월읍 하송로 64	033)372-4000	http://ywhc.go.kr
	인제군	24633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033)460-2275	http://www.inje.go.kr/health
	정선군	26127	정선읍 녹송로 33	033)560-2550	http://www.jeongseon.go.kr/portal/jeongseongun/healthcenter
	철원군	24037	갈말읍 군탄로 16	033)450-5550	http://health.cwg.go.kr
	평창군	25377	평창읍 종부로 61	033)332-4000	http://www.health700.go.kr/main/main.php
	홍천군	25135	홍천읍 신장대로 5	033)434-4000	www.hongcheon.gangwon.kr/health/index.do
	화천군	24119	화천읍 강변로 111	033)442-4424	http://health.ihc.go.kr/
	횡성군	25234	횡성읍 횡성로 379	033)340-5622	http://health.hsg.go.kr

❖ 충청북도

시·도	보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충북 (14)	청주시 상당구	28806	남일면 단재로 480	043)201-3116	http://www.cheongju.go.kr/sdhealth/index.do
	청주시 흥덕구	28365	비하로 12번길 46	043)201-3580	http://www.cheongju.go.kr/hdhealth/index.do
	청주시 서원구	28565	사직대로 227	043)201-3235	http://www.cheongju.go.kr/swhealth/index.do
	청주시 청원구	28125	오창읍 과학산업 3로 238	043)201-3421	http://www.cheongju.go.kr/cwhealth/index.do
	충주시	27339	으뜸로 21	043)850-3515	https://www.chungju.go.kr/health
	제천시	27152	익림대로 242	043)646-2720	http://www.jecheon.go.kr/health/index.do
	보은군	28943	보은읍 동광길 50	043)543-2825	http://www.boeun.go.kr/health/index.do
	옥천군	29032	옥천읍 삼양로 8길 10	043)730-2114	http://health.oc.go.kr
	영동군	29150	영동읍 반곡동길 7	043)740-5622	http://health.yd21.go.kr
	증평군	27948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043)835-4220	http://www.jp.go.kr/health.do
	진천군	27832	진천읍 중앙북 1길 11-8	043)539-7771	http://www.jincheon.go.kr/health/main.do
	괴산군	28033	괴산읍 동진천길 43	043)832-4000	http://gsat.goesan.go.kr/health/index.do
	음성군	27705	음성읍 중앙로 49	043)872-2136	http://health.es21.go.kr/
	단양군	27010	단양읍 삼봉로 53	043)423-4000	http://health.dy21.net/health/main/

❖ 충청남도

시·도	보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충남 (16)	계룡시	32823	장안로 54	042)840-3507	http://www.gyeryong.go.kr/html/health/
	공주시	32572	봉황로 123	041)840-8759	http://www.gongju.go.kr/health
	논산시	32993	논산대로 382	041)746-8012	http://www.nonsan.go.kr/health/
	보령시	33493	남포면 보령남로 234	041)930-5910	http://health.brcn.go.kr/
	서산시	31997	호수공원 6로 6	041)661-8100	http://www.seosan.go.kr/health/index.do
	아산시	31521	번영로 224번길 20	1577-6611	http://health.asan.go.kr/
	천안시 서북구	31162	번영로 156	041)521-2552	http://www.cheonan.go.kr/shealth.do
	천안시 동남구	31131	버들로 34	041)521-2651	http://www.cheonan.go.kr/dhealth.do
	금산군	32726	금산읍 금산로 1559	041)750-4311	http://www.geumsan.go.kr/html/health/
	당진시	31777	서부로 56	041)360-6003	http://www.dangjin.go.kr/health.do
	부여군	33140	부여읍 성왕로 205	041)830-8600	http://www.buyeo.go.kr/html/health/
	서천군	33638	서천읍 사곡길 26	041)950-6708	http://www.seocheon.go.kr/health.do
	예산군	32434	예산읍 아리랑로 147	041)339-8993	http://health.yesan.go.kr/
	청양군	33324	청양읍 칠갑산로 7길 54	041)942-3401	http://health.cheongyang.go.kr
	태안군	32148	태안읍 서해로 1952-16	041)671-5315	http://www.taean.go.kr/life/sub02_10_01.do
	홍성군	32236	홍성읍 문화로 106	041)632-2588	http://health.hongseong.go.kr

❖ 전라북도

시·도	보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전북 (14)	군산시	54091	수송동로 58	063)462-4923	http://www.gunsan.go.kr/health/index.gunsan
	김제시	54385	성산길 138	063)540-1300	http://health.gimje.go.kr
	남원시	55766	요천로 1285	063)625-4000	http://health.namwon.go.kr
	익산시	54543	무왕로 975	063)859-4801	http://www.iksan.go.kr/health/index.iksan
	전주시	55038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063)281-6200	http://health.jeonju.go.kr
	정읍시	56177	수성 1로 61	063)539-6137	http://health.jeongeup.go.kr/
	고창군	56442	고창읍 전봉준로 90	063)560-8711	http://www.gochang.go.kr/health/index.gochang
	무주군	55515	무주읍 한풍루로 413	063)320-8322	https://www.muju.go.kr/index.9is?contentUid=816ac6da5083c5ac01509889dc4f03dc
	부안군	56305	부안읍 오리정로 124	063)584-1261	http://www.buan.go.kr/hospital/index.buan
	순창군	56049	순창읍 교성로 135	063)650-5211	http://health.sunchang.go.kr/index.sko
	완주군	55333	삼례읍 삼봉로 215-20	063)290-3008	http://health.wanju.go.kr
	임실군	55927	임실읍 호국로 1680	063)640-3101	http://bogun.imsil.go.kr/index.sko
	장수군	55631	장수읍 장천로 247	063)351-8000	https://www.jangsu.go.kr/index.jangsu?menuCd=DOM_000000106004000000
	진안군	55422	진안읍 진무로 1189	063)430-8560	http://business.jinan.go.kr/index.sko?contentsSid=1022

❖ 전라남도

시·도	보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전남 (22)	광양시	57741	광양읍 인덕로 1100	061)797-4008	http://www.gwangyang.go.kr/index.gwangyang?menuCd=DOM_000000105009002001&cpath=
	나주시	58274	풍물시장 2길 57-32	061)339-2121	http://health.naju.go.kr/
	목포시	58613	원산로 45번길 5	061)277-4000	http://health.mokpo.go.kr/
	순천시	57938	중앙로 232	061)749-6905	http://www.schc.go.kr/sclc/12/12010100.jsp
	여수시	59674	시청서 4길 47	061)682-4000	http://yshealth.yeosu.go.kr/
	강진군	59240	강진읍 목리길 11	061)430-3531	http://www.gangjin.go.kr/hospital/
	고흥군	59542	고흥읍 등암 3길 5	061)830-5561	http://health.goheung.go.kr/health/
	곡성군	57542	곡성읍 곡성로 854	061)362-4000	http://www.gokseong.go.kr/health
	구례군	67647	구례읍 동편제길 30	061)780-2006	http://www.gurye.go.kr/health
	담양군	57335	담양읍 완동길 10-11	061)383-4000	http://health.damyang.go.kr
	무안군	58532	무안읍 무안로 530	061)450-5041	http://health.muam.go.kr
	보성군	59455	보성읍 송재로 153	061)853-4000	http://www.boseong.go.kr/health
	신안군	58827	압해읍 천사로 1004	061)243-8550	https://www.shinan.go.kr/home/www/dept_info/health/health_center/
	영광군	57043	영광읍 신남로 4길 17	061)350-5552	www.yeonggwang.go.kr/main/?site=hospital
	영암군	58421	영암읍 오리정길 39	061)470-6525	http://health.yeongam.go.kr
	완도군	59108	완도읍 농공단지길 34	061)550-6701	http://health.wando.go.kr/
	장성군	57220	장성읍 청운 11길 13	061)390-7550	http://www.jangseong.go.kr/home/www/openinfo/health
	장흥군	59327	장흥읍 흥성로 49	061)862-4000	www.jangheung.go.kr/health
	진도군	58922	진도읍 남동 1길 40-9	061)540-6000	http://health.jindo.go.kr/home/sub.cs?m=280
	함평군	57153	함평읍 중앙길 54-8	061)320-3547	http://www.hampyeong.go.kr/health/
	해남군	59038	해남읍 해남로 46	061)531-3738	http://health.haenam.go.kr
	화순군	58122	화순읍 쌍충로 62	061)379-5305	http://www.hwasun.go.kr/index.do?S=S06

❖ 경상북도

시·도	보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경북 (25)	포항시 남구	37838	동해안로 6119	054)270-4004	http://ihealth.ipohang.org
	포항시 북구	37607	삼흥로 98	054)270-4114	http://iphhealth.ipohang.org/
	경주시	38099	양정로 300	054)779-8631	http://health.gyeongju.go.kr/
	김천시	39532	시청 1길 221	054)433-4000	http://www.gchealth.go.kr/
	안동시	36694	서동문로 165	054)855-5986	http://www.andong.go.kr/health/main.do
	구미시 구미	39192	선산대로 111	054)480-4000	http://www.gumi.go.kr/health/main.do
	구미시 선산	39112	선산읍 선주로 121	054)480-4130	https://www.gumi.go.kr/ssphc/main.do
	영주시	36132	시청로 1번길 19	054)631-4000	http://health.yeongju.go.kr
	영천시	38849	옛군청 1길 31	054)339-7860	http://www.yc.go.kr/health/main.do
	상주시	37183	중앙로 111	054)535-4000	http://health.sangju.go.kr
	문경시	36971	점촌 1길 9	054)555-2033	http://www.mghc.go.kr
	경산시	38616	남매로 158	053)810-6364	http://gbgs.go.kr/open_content/health/index.do
	군위군	39020	군위읍 군청로 70	054)380-7401	http://www.gunwi.go.kr/health
	의성군	37330	의성읍 북부길 150	054)830-6660	tour.usc.go.kr/health/main.tc
	청송군	37433	청송읍 의료원길 19	054)870-7222	http://health.cs.go.kr/main/
	영양군	36540	영양읍 동서대로 82	054)680-5114	http://www.yyg.go.kr/www/health
	영덕군	36427	영덕읍 경동로 8367	054)730-6823	http://www.yd.go.kr/?page_id=2876
	청도군	38329	화양읍 청화로 79-11	054)370-6470	http://www.cheongdo.go.kr/open.content/health/
	고령군	40138	대가야읍 왕릉로 56-5	054)954-1300	http://health.goryeong.go.kr/
	성주군	40022	성주읍 성밖숲길 12	054)933-2400	http://www.sj.go.kr/S0006/
	칠곡군	39872	왜관읍 관문로 1길 30	054)973-4000	http://health.chilgok.go.kr
	예천군	36819	예천읍 충효로 424	054)654-2308	http://health.ycg.kr/
	봉화군	36238	봉화읍 봉화로 1203	054)673-4000	http://bonghwa.go.kr/open.content/health/
	울진군	36324	울진읍 읍내 8길 61-8	054)783-1250	http://www.uljin.go.kr/health/index.uljin
	울릉군	40217	울릉읍 울릉순환로 396-18	054)791-4000	http://www.ulleung.go.kr/health/

❖ 경상남도

시·도	보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경남 (20)	거제시	53236	수양로 506	055)639-6200	www.geoje.go.kr/health/ index.geoje
	김해시	50958	분성로 227	055)330-4451	http://health.gimhae.go.kr
	창원시 창원	51444	의창구 중앙대로162번길 9	055)225-4000	https:// www.changwon.go.kr/depart/ contents.do?mld=0602010000
	창원시 마산	51742	마산 합포구 월영동북로 15	055)245-4000	https:// www.changwon.go.kr/depart/ contents.do?mld=0605010000
	창원시 진해	51629	진해구 진해대로 1101	055)225-6101	https:// www.changwon.go.kr/depart/ contents.do?mld=0608010000
	밀양시	50437	삼문중앙로 41	055)359-7020	http://health.miryang.go.kr
	사천시	52539	용현면시청로 77	055)831-3560	http://health.sacheon.go.kr/main/
	양산시	50629	삼량로 169	055)388-4000	http://www.yangsan.go.kr/health/ main.do
	진주시	52732	월아산로 2026	055)741-4000	www.jinju.go.kr/health
	통영시	53038	안개 4길 108	055)650-6010	www.tongyeong.go.kr/health.web
	거창군	50142	거창읍 거함대로 3079	055)940-8310	http://www.geochang.go.kr/ health/Index.do
	고성군	52934	고성읍 남포로 79번길 103-3	055)670-4001	http://health.goseong.go.kr/
	남해군	52413	남해읍 선소로 6	055)860-8701	www.namhae.go.kr/health/ Index.do
	산청군	52221	산청읍 중앙로 97	055)970-7500	http://medical.sancheong.go.kr
	의령군	52151	의령읍 의병로 8길 16	055)570-4010	http://health.uiryeong.go.kr
	창녕군	50317	창녕읍 우포2로 1189-35	055)530-6201	http://health.cng.go.kr/
	하동군	52333	하동읍 군청로 31	055)882-4000	www.hadong.go.kr/health.web
	함안군	52046	가야읍 중앙남 4길 10	055)580-3101	http://health.haman.go.kr/main/
	함양군	50039	함양읍 한들로 141	055)960-5331	www.hygn.go.kr/specialty/ health.web
	합천군	50232	합천읍 동서로 39	055)930-3695	http://health.hc.go.kr

❖ 제주도

시·도	보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제주 (6)	서귀포시 서귀포	63584	중양로 101번길 52	064)760-6001	http://www.seogwipo.go.kr/ group/health/seogwipo/main.htm
	서귀포시 동부	63620	남원읍 태위로 527	064)760-6111	http://www.seogwipo.go.kr/ group/health/east/main.htm
	서귀포시 서부	63513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5번길 12	064)760-6251	http://www.seogwipo.go.kr/ group/health/west/main.htm
	제주시 제주	63219	연삼로 264	064)728-4010	http://chc.jeju.go.kr/ index.php?siid=jeju
	제주시 동부	63357	구좌읍 김녕로 14길 6	064)728-1515	http://chc.jeju.go.kr/ index.php?siid=ejeju
	제주시 서부	63028	한림읍 강구로 5	064)728-4111	http://chc.jeju.go.kr/ index.php?siid=wjeju

2018 보건소
알차게
이용하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